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11월 1일

군산시 조례 제1989호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군산시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산시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군산시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군산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

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고향사랑기금”이란 군산시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4. “기부자”란 군산시의 주민이 아닌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을 말한다.

5. “답례품”이란 군산시가 기부자에게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향사랑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

제4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 계정과 운용기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26조 및 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2.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계장(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군산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고향사랑기부업무 관련 국장, 복지 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2인

나.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다.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2인

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인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계장(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7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

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3장 답례품목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등

제2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산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선정(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

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성된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관련 국장, 농·축산업 업무 관련 국장, 경제·수산 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나.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1인

라. 기타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1인

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인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산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군산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군산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산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및 상품 등

제2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군산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산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산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2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7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2조에서 제25조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1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의 계좌를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영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공고 제2022 - 2209호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생활에 불합리하게 획정된 읍면동간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동 변경
 - 회현면 월연리 431-2번지 외 28필지 → 옥구읍 수산리 편입
 - 대야면 지경리 1645-11번지 외 12필지 → 회현면 증석리 편입

경계조정 결정 대상지 내역

① 회현면 월연리 662-1외 ⇒ 옥구읍 수산리 편입

- ❖ 조정 규모
 - 면적 : 73,436.8㎡, 인구 : 1명
- ❖ 조정사유
 - 회현면에서 옥구읍으로 편입 요구
 - 동일 필지내 법정동 동일화
- ❖ 의견조사 결과
 - 의견회수율 : 84%, 찬성율 : 100%
- ❖ 최종결정
 - 실거주지와 토지 행정구역간 차이로 재산권행사 및 직불금 신청 등 주민 불편 초래로,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계조정 추진



② 대야면 지경리 1645-11외 ⇒ 회현면 증석리 편입

- ❖ 조정 규모
 - 면적 : 11,613.3㎡, 인구 : 0명
- ❖ 조정사유
 - 대야면에서 회현면으로 편입 요구
 - 동일 부지내 관할동 단일화
- ❖ 의견조사 결과
 - 의견회수율 : 82%, 찬성율 : 100%
- ❖ 최종결정
 - 실거주지와 토지 행정구역간 차이로 재산권행사 및 직불금 신청 등 주민 불편 초래로,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계조정 추진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 (☎ 063-454-2245)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자우편(csh5437@korea.kr),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454-224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성명 또는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군산시 조례 호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옥구읍 관할구역에 회현면 월연리 일부지역을, 회현면 관할구역에 대야면 지경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6” 과 같다.

제2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회현면 월연리, 대야면 지경리의 관할구역 중 제1조 제11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6” 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6)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회현면 월연리 → 옥구읍으로 편입)

| 연번 | 현)행정구역명 | | 지 번 | 지 목 | 지적 (㎡) | 변경 후 지번 | | | |
|----|---------|-----|-------------|-----|-----------------|---------|-----|------|-----------------|
| | 행정동 | 법정동 | | | | 행정동 | 법정동 | 지 번 | 지적 (㎡) |
| | 소 계 | | 29필지 | | 73,436.8 | | | | 73,436.8 |
| 1 | 회현면 | 월연리 | 431-2 | 답 | 84.0 | 옥구읍 | 수산리 | 1298 | 84.0 |
| 2 | 회현면 | 월연리 | 452-4 | 답 | 33.0 | 〃 | 〃 | 1306 | 33.0 |
| 3 | 회현면 | 월연리 | 452-7 | 답 | 197.0 | 〃 | 〃 | 1310 | 197.0 |
| 4 | 회현면 | 월연리 | 504 | 대 | 28.0 | 〃 | 〃 | 1307 | 28.0 |
| 5 | 회현면 | 월연리 | 504-1 | 대 | 207.0 | 〃 | 〃 | 1308 | 207.0 |
| 6 | 회현면 | 월연리 | 596 | 제방 | 918.0 | 〃 | 〃 | 1325 | 918.0 |
| 7 | 회현면 | 월연리 | 662-1 | 답 | 4435.6 | 〃 | 〃 | 1297 | 4435.6 |
| 8 | 회현면 | 월연리 | 662-2 | 답 | 2349.2 | 〃 | 〃 | 1299 | 2349.2 |
| 9 | 회현면 | 월연리 | 662-3 | 답 | 5039.7 | 〃 | 〃 | 1300 | 5039.7 |
| 10 | 회현면 | 월연리 | 662-4 | 답 | 2266.6 | 〃 | 〃 | 1301 | 2266.6 |
| 11 | 회현면 | 월연리 | 663-1 | 답 | 6860.5 | 〃 | 〃 | 1302 | 6860.5 |
| 12 | 회현면 | 월연리 | 663-2 | 답 | 10461.7 | 〃 | 〃 | 1303 | 10461.7 |
| 13 | 회현면 | 월연리 | 676-1 | 답 | 429.1 | 〃 | 〃 | 1304 | 429.1 |
| 14 | 회현면 | 월연리 | 676-2 | 답 | 5983.9 | 〃 | 〃 | 1305 | 5983.9 |
| 15 | 회현면 | 월연리 | 676-3 | 답 | 4937.3 | 〃 | 〃 | 1309 | 4937.3 |
| 16 | 회현면 | 월연리 | 677-1 | 답 | 8030.1 | 〃 | 〃 | 1311 | 8030.1 |
| 17 | 회현면 | 월연리 | 677-2 | 답 | 2401.1 | 〃 | 〃 | 1312 | 2401.1 |
| 18 | 회현면 | 월연리 | 677-3 | 답 | 1496.2 | 〃 | 〃 | 1313 | 1496.2 |
| 19 | 회현면 | 월연리 | 677-4 | 답 | 3813.2 | 〃 | 〃 | 1314 | 3813.2 |
| 20 | 회현면 | 월연리 | 677-5 | 답 | 3807.8 | 〃 | 〃 | 1315 | 3807.8 |
| 21 | 회현면 | 월연리 | 677-6 | 답 | 2766.1 | 〃 | 〃 | 1316 | 2766.1 |
| 22 | 회현면 | 월연리 | 704-1 | 구거 | 1511.0 | 〃 | 〃 | 1317 | 1511.0 |
| 23 | 회현면 | 월연리 | 707 | 구거 | 765.1 | 〃 | 〃 | 1318 | 765.1 |
| 24 | 회현면 | 월연리 | 732-1 | 도로 | 1290.7 | 〃 | 〃 | 1319 | 1290.7 |
| 25 | 회현면 | 월연리 | 733-1 | 구거 | 1936.5 | 〃 | 〃 | 1321 | 1936.5 |
| 26 | 회현면 | 월연리 | 734 | 도로 | 138.0 | 〃 | 〃 | 1320 | 138.0 |
| 27 | 회현면 | 월연리 | 735 | 구거 | 384.2 | 〃 | 〃 | 1322 | 384.2 |
| 28 | 회현면 | 월연리 | 736 | 도로 | 32.5 | 〃 | 〃 | 1323 | 32.5 |
| 29 | 회현면 | 월연리 | 737 | 구거 | 833.7 | 〃 | 〃 | 1324 | 833.7 |

지번별 조서 부여 현황

(대야면 지경리 → 회현면으로 편입)

| 연번 | 현)행정구역명 | | 지 번 | 지 목 | 지적 (㎡) | 변경 후 지번 | | | |
|----|---------|-----|-------------|-----|-----------------|---------|-----|------|-----------------|
| | 행정동 | 법정동 | | | | 행정동 | 법정동 | 지 번 | 지적 (㎡) |
| | 소 계 | | 13필지 | | 11,613.3 | | | | 11,613.3 |
| 1 | 대야면 | 지경리 | 1645-11 | 대 | 38.0 | 회현면 | 중석리 | 1351 | 38.0 |
| 2 | 대야면 | 지경리 | 1645-22 | 답 | 536.0 | " | " | 1357 | 536.0 |
| 3 | 대야면 | 지경리 | 1645-13 | 도 | 71.0 | " | " | 1348 | 71.0 |
| 4 | 대야면 | 지경리 | 1735-1 | 전 | 618.0 | " | " | 1353 | 618.0 |
| 5 | 대야면 | 지경리 | 1736-1 | 대 | 286.0 | " | " | 1352 | 286.0 |
| 6 | 대야면 | 지경리 | 1782-1 | 답 | 43.0 | " | " | 1355 | 43.0 |
| 7 | 대야면 | 지경리 | 1783-1 | 전 | 198.0 | " | " | 1356 | 198.0 |
| 8 | 대야면 | 지경리 | 1786-1 | 답 | 43.0 | " | " | 1354 | 43.0 |
| 9 | 대야면 | 지경리 | 2629 | 대 | 336.0 | " | " | 1350 | 336.0 |
| 10 | 대야면 | 지경리 | 2629-1 | 답 | 1,673.5 | " | " | 1349 | 1,673.5 |
| 11 | 대야면 | 지경리 | 2630 | 답 | 3,962.2 | " | " | 1359 | 3,962.2 |
| 12 | 대야면 | 지경리 | 2631 | 답 | 3,806.0 | " | " | 1360 | 3,806.0 |
| 13 | 대야면 | 지경리 | 2636 | 도 | 2.6 | " | " | 1358 | 2.6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관할구역의 편입)</p> <p>① ~ ⑩ (생략)</p> <p>⑪ <신 설></p> | <p>제1조(관할구역의 편입)</p> <p>① ~ ⑩ (현행과 같음)</p> <p>⑪ 옥구읍 관할구역에 회현면 월연리 일부지역을, 회현면 관할구역에 대야면 지경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6”과 같다.</p> |
| <p>제2조(관할구역의 제외)</p> <p>① ~ ⑨ (생략)</p> <p>⑩ <신 설></p> | <p>제2조(관할구역의 제외)</p> <p>① ~ ⑩ (현행과 같음)</p> <p>⑪ 회현면 월연리, 대야면 지경리의 관할구역 중 제1조 제11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p> |

군산시 공고 제 2022 - 2210호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치법규의 피한정후견인의 사전적·획일적 결격조항 정비 필요
-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자치법규 정비계획 따른 관련 조문 삭제
- 시민의 납부의식 고취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등 체납자 제외규정 추가

2. 주요내용

- 군산시 시민의장 수상후보자 제한사유(제9조) 조문 정비
 - 제1호 [피한정후견인] 삭제 및 제3호 [지방세 등 체납자] 신설

3. 의견제출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 2) 전화 063-454-224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 (063-454-22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세 등 체납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수상후보자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p> <p>2. <생 략></p> <p><신 설></p> | <p>제9조(수상후보자 제한) ----- ----- -----</p> <p>1. 피성년후견인</p> <p>2. (현행과 같음)</p> <p>3. 지방세 등 체납자</p> |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첨부 생략

4. 작 성 자

| | |
|-------|------------------------|
| 작 성 자 | 군산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장 박 종 길 |
| 연 락 처 | (063) 454-2220 |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 조 례 명: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시자
 - 단체명 및 대표자(개인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제시사항

| 찬반 여부 | 사 유 | 비 고 |
|-------|-----|-----|
| | | |

2022년 11월 일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고시 제2022-16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2-59호선 외 3개노선 및 145호 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미룡동 9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중로2-59호선 외 3개노선 및 145호 완충녹지)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군 산 시 장



◆ 사업의 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미룡동 92-3번지 외 2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완충녹지) 사업
 - 나. 명 칭 : 미룡동 9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중로 2-59 : B=15m, L=90m, A=1,356㎡(잔여구간 개설)
 - 나. 소로 1-474 : B=10m, L=37m, A=372㎡(노선 신설)
 - 다. 소로 2-686 : B=8m, L=21m, A=407㎡(노선 연장구간 개설)
 - 라. 소로 3-874 : B=7m, L=38m, A=268㎡(노선 신설)
 - 마. 145호 완충녹지 : A=4,945㎡(완충녹지 신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치평동, 유탑 유블레스 트윈시티)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유탑디앤씨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03. 3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중로2-59호선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이외의관리자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 내용 | | | |
| 미룡동 | 834-23 | 도 | 2,019 | 30 | 국(국토교통부) | | | | | | | |
| 미룡동 | 92-7 | 답 | 1,194 | 1,188 | 군산시 | | | | | | | |
| 미룡동 | 92 | 답 | 2,104 | 138 | 김희석 |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38(월곶동) | | | | | | |
| | | | | | 김형석 | 전라북도 군산시 용둔길 1-16(미룡동) | | | | | | |
| | | | | | 김미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4길 16-7 (노고산동) | | | | | | |
| | | | | | 주식회사 유탑디앤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동 201호 (치평동, 유탑 유블레스 트윈시티) | | | | | | |
| | | | | | 김경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57, 201(신촌동) | | | | | | |
| 합 계 | 3필지 | | 5,317 | 1,356 | | | | | | | | |

- 소로1-474호선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이외의관리자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 내용 | | | |
| 미룡동 | 92-10 | 답 | 318 | 318 | 김형석 | 전라북도 군산시 용둔길 1-16(미룡동) | 군산 산림조합 | 전북 군산시 조촌동 841-13 | 근저당 | | | |
| 미룡동 | 92-7 | 답 | 1,194 | 6 | 군산시 | | | | | | | |
| 미룡동 | 92 | 답 | 2,104 | 138 | 김희석 |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38(월곶동) | | | | | | |
| | | | | | 김형석 | 전라북도 군산시 용둔길 1-16(미룡동) | | | | | | |
| | | | | | 김미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4길 16-7 (노고산동) | | | | | | |
| | | | | | 주식회사 유탑디앤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동 201호 (치평동, 유탑 유블레스 트윈시티) | | | | | | |
| | | | | | 김경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57, 201(신촌동) | | | | | | |
| 합 계 | 3필지 | | 3,616 | 462 | | | | | | | | |

- 소로2-686호선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이외의권리자 |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 내용 | |
| 미룡동 | 92-9 | 답 | 432 | 92 | 군산시 | | | | | |
| 미룡동 | 201-4 | 답 | 1,083 | 315 | 군산시 | | | | | |
| 합계 | 3필지 | | 1,515 | 407 | | | | | | |

- 소로3-874호선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이외의권리자 |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 내용 | |
| 미룡동 | 92-3 | 답 | 839 | 42 | 김화석 |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38(월곶동) | | | | |
| | | | | | 김형석 | 전라북도 군산시 용둔길 1-16(미룡동) | | | | |
| | | | | | 주식회사 유타디앤씨 | 광주광역시 서구 사창로 92, 2동 201호 (차평동,유타 유프레스 트윈시티) | | | | |
| | | | | | 김잠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4길 16, 기동 107호(자양동,성화연립) | | | | |
| 미룡동 | 94-1 | 전 | 69 | 41 | 김화석 |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38(월곶동) | | | | |
| | | | | | 김형석 | 전라북도 군산시 용둔길 1-16(미룡동) | | | | |
| | | | | | 김미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4길 16-7 (노고산동) | | | | |
| | | | | | 김경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1길 57, 201(신촌동) | | | | |
| 미룡동 | 94-2 | 도 | 7 | 3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 | | | |
| 미룡동 | 95 | 전 | 42 | 42 | 김화석 |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38(월곶동) | | | | |
| | | | | | 김형석 | 전라북도 군산시 용둔길 1-16(미룡동) | | | | |
| | | | | | 김미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4길 16-7 (노고산동) | | | | |
| | | | | | 김경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1길 57, 201(신촌동) | | | | |
| 미룡동 | 168-1 | 답 | 995 | 34 | 이상조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60, 기동 309호(장수군로자임대연립주택) | 상민농업 협동조합 | 전북 원주군 상민면 신리로 53 | 근저당 지상권 | |
| 미룡동 | 834-23 | 도 | 2,019 | 106 | 국(국토교통부) | | | | | |
| 합계 | 6필지 | | 3,971 | 268 | | | | | | |

- 145호 완충녹지

| 위치 | 자번 | 지목 | 지적 (㎡) | 편의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이외의관리자 |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 내용 | |
| 미릉동 | 92-6 | 답 | 642 | 100 | 김화석 |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38(월곶동) | | | | |
| | | | | | 김형석 | 전라북도 군산시 용둔길 1-16(미릉동) | | | | |
| | | | | | 주식회사 유탑디앤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동 201호 (차평동, 유탑 유블레스 트윈시티) | | | | |
| | | | | | 김점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4길 16, 기동 107호(자양동, 상화연립) | | | | |
| 미릉동 | 186-1 | 대 | 859 | 9 | 강영순 | 군산시 내운동 812-6 | | | | |
| 미릉동 | 187 | 대 | 262 | 20 | 은희범 | 전라북도 군산시 용둔길 47-5(미릉동) | | | | |
| 미릉동 | 187-1 | 대 | 155 | 155 | 은희범 | 군산시 미릉동 900-1 미릉3) 주공아파트 305동 902호 | | | | |
| 미릉동 | 188-1 | 답 | 2,259 | 1,550 | 김상기 | 군산시 미릉동 199 | 군산농업협동조합 | 군산시 중앙로 3가 38 | 근저당 지상권 | |
| 미릉동 | 188-2 | 답 | 186 | 186 | 김형석 | 전라북도 군산시 용둔길 1-16(미릉동) | 군산신림조합 | 전북 군산시 조춘동 841-13 | 근저당 | |
| 미릉동 | 188-3 | 도 | 195 | 71 | 박문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85길 28(상봉동) | | | | |
| | | | | | 고정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35, 220동 402호 | | | | |
| | | | | | 고선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132번길 18(정자동) | | | | |
| | | | | | 고석일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93, 102동 1205호(가락동, 가락쌍용아파트) | | | | |
| | | | | | 고석향 |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36, 404동 1301호 | | | | |
| | | | | | 고석진 | 전라북도 정읍시 남산2길 14-25 | | | | |
| | | | | | 고석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5길 20, 401호 | | | | |
| | | | | | 고연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77번길 33, 104동 902호 | | | | |
| | | | | | 고연숙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5, 109동 501호 | | | | |
| 미릉동 | 189 | 대 | 628 | 624 | 주식회사 유탑디앤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동 201호 (차평동, 유탑 유블레스 트윈시티) | | | | |
| 미릉동 | 190 | 전 | 154 | 154 | 김종서 | 대전 대덕구 법동 283-1 주공아파트 305동 112호 | | | | |
| 미릉동 | 200-2 | 전 | 111 | 111 | 김석경 | 군산시 미릉동 198 | | | | |
| 미릉동 | 산277 | 임 | 3,174 | 1,048 | 고충곤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2, 110동 502호 | 호성신용협동조합 | 전북 전주시 덕진구 | 근저당 지상권 | |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이외의권리자 |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내용 | |
| | | | | | | | | 건원로 499 | | |
| 미룡동 | 산280 | 임 | 500 | 304 | 김정애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길 53-3 | | | | |
| | | | | | 안상문 |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안길 3 | | | | |
| | | | | | 이순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로 101, 비동 | | | | |
| | | | | | 유한회사 심안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 1로204, 1층 | | | | |
| 미룡동 | 산281 | 임 | 544 | 482 | 유한회사 이안 |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광활로 665 | | | | |
| | | | | | 김정애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길 53-3 | | | | |
| | | | | | 안상문 |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안길 3 | | | | |
| | | | | | 이순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로 101, 비동 | | | | |
| 미룡동 | 834-23 | 도 | 2,019 | 131 | 국(국토교통부) | | | | | |
| 합 계 | 14필지 | | 11,688 | 4,945 | | | | | | |

군산시 고시 제2022-16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4-3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4-3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나. 명 칭 :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부지면적 : 9,879m²
 - 나. 건축규모 : 건축면적 1,383.60m², 연면적 1,679.36m²
4. 사업시행자
 - 가.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 나. 성 명 : 군산시장(농촌지원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연 번 | 소재지 | 지번 | | | 지 목 | 면 적(㎡) | | 소 유 자 | |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 | |
|--------|------------|----|-----|-----|--------|-----------|-------|-------------|-----|------------|----|----------|
| | | 산 | 본번 | 부번 | | 공부상 | 편입면적 | 성 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관리 내용 |
| 1 | 개장면 운회리 | | 634 | 33 | 답 | 3,779 | 3,422 | 군산시 | | | | |
| 2 | | | 634 | 34 | 답 | 3,770 | 3,393 | 군산시 | | | | |
| 3 | | | 634 | 35 | 답 | 1,820 | 1,820 | 군산시 | | | | |
| 4 | | | 634 | 108 | 답 | 1,570 | 1,244 | 군산시 | | | | |
| 소계 | | | | | | 10,939 | 9,879 | | | | | |

군산시 고시 제2022 - 1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 15조제6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군 산 시 장



- 1. 사 업 명 : 군산 경장동 517-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교보자산신탁(주)
 - 나. 대 표 자 : 조혁중
 -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7층
-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10월 14일
-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경장동 517-4번지 일원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민간분양)
 - 다. 대지면적 : 3,889.48㎡
 - 라. 건축면적 : 2,825.1094㎡(건폐율 : 72.64%)
 - 마. 연 면 적 : 51,909.9961㎡(용적률 : 908.44%)
 - 바. 건축규모 : 지하 3층~지상 46층 /아파트 2개동 외, 250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 형별 | 주택구분 | 세대수 | 전용면적 (㎡) | 공용면적 (㎡) | 공급면적 (㎡) | 비고 |
|-------|------|-----|-------------|-------------|-------------|----|
| 계 | | 250 | | | | |
| 84A형 | 민영주택 | 32 | 84.8225 | 32.0636 | 116.8861 | |
| 84B형 | 민영주택 | 32 | 84.9374 | 32.3378 | 117.2752 | |
| 94A형 | 민영주택 | 32 | 94.8953 | 34.7962 | 129.6715 | |
| 96A형 | 민영주택 | 44 | 96.5251 | 35.5118 | 132.0369 | |
| 113A형 | 민영주택 | 39 | 113.7151 | 39.1008 | 152.8159 | |
| 113B형 | 민영주택 | 32 | 113.7153 | 41.7080 | 155.4233 | |
| 113C형 | 민영주택 | 39 | 113.8978 | 39.7838 | 153.6816 | |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20,461,427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6년 7월 1일

5.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3)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 - 16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협의,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20.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21-00003호 (2022. 10. 19.)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
 - 성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③ 허가목적 : 새만금 호안 및 접안시설 축조관련 공사용 제작장 조성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리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해역
- ⑤ 면 적 : 32,951㎡
- ⑥ 허가기간 : 2021. 03. 09. ~ 2026. 01.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2 - 16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10. 24.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1. 시 행 자 : 군산대학교 해양풍력연구원
- 2. 주 소 :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군산대학교 해양풍력연구원
- 3. 공사내용 : 고정식 해상기상탑 1기 설치
- 4. 공사장소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09번지 인근 공유수면
- 5. 공사면적 : 2,000m²
- 6. 공사기간 : 2022. 7. 26. ~ 2023. 9. 30.

군산시 고시 제2022 - 17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구암동 355-1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대로1-4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28.



군 산 시 장

◆ 사업의 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구암동 355-2번지 외 4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나. 명 칭 : 구암동 355-10번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도로) 개설사업(대로1-4호선 외 2개노선)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대로 1-4 : B=3.7~4m, L=255m, A=892㎡(폭원확장구간 개설)
 - 나. 중로 2-188 : B=15~17m, L=68m, A=1,132㎡(노선 신설)
 - 다. 소로 1-110 : B=2m, L=167.7m, A=351㎡(폭원확장구간 개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90, 201-3호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도아디앤씨 대표 정호경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15.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대로 1-4호선

| 순번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이외의관리자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내용 | |
| 1 | 군산시 구암동 | 480-8 | 장 | 2,034 | 148 | 군산시 | | | | | |
| 2 | | 480-10 | 장 | 454 | 182 | 군산시 | | | | | |
| 3 | | 480-13 | 장 | 7,144 | 395 | 군산시 | | | | | |
| 4 | | 601-67 | 장 | 954 | 26 | 군산시 | | | | | |
| 5 | | 601-126 | 장 | 661 | 141 | 김대선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17 108동3403호(신영지웰사티1차아파트) | | | | |
| 계 | 5필지 | | | 11,247 | 892 | | | | | | |

중로 2-188호선

| 순번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이외의관리자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관리내용 | |
| 1 | 군산시 구암동 | 355-1 | 구 | 46 | 7 |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 | |
| 2 | | 355-2 | 대 | 2,695 | 32 | 교보자산신탁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 | |
| 3 | | 355-7 | 구 | 45 | 45 | 군산시 | | | | | |
| 4 | | 355-8 | 대 | 216 | 216 | 군산시 | | | | | |
| 5 | | 355-9 | 대 | 66 | 66 | 군산시 | | | | | |
| 6 | | 355-13 | 구 | 8 | 8 | 군산시 | | | | | |
| 7 | | 355-14 | 대 | 10 | 10 | 군산시 | | | | | |
| 8 | | 355-15 | 대 | 3 | 1 | 군산시 | | | | | |
| 9 | | 356-4 | 전 | 12 | 12 | 군산시 | | | | | |
| 10 | | 356-5 | 대 | 1 | 1 | 군산시 | | | | | |
| 11 | | 356-8 | 전 | 36 | 36 | 군산시 | | | | | |
| 12 | | 480-5 | 장 | 350 | 1 | 군산시 | | | | | |
| 13 | | 480-6 | 구 | 1,405 | 1 | 군산시 | | | | | |
| 14 | | 480-10 | 장 | 454 | 57 | 군산시 | | | | | |
| 15 | | 480-11 | 구 | 4 | 4 | 군산시 | | | | | |

| 순번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이외의권리자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내용 | |
| 16 | | 480-20 | 장 | 38 | 21 | 군산시 | | | | | |
| 17 | | 480-21 | 장 | 41 | 41 | 군산시 | | | | | |
| 18 | | 480-22 | 장 | 26 | 26 | 군산시 | | | | | |
| 19 | | 480-23 | 장 | 36 | 21 | 군산시 | | | | | |
| 20 | | 480-26 | 장 | 57 | 57 | 신기우 | 군산시 외산4길 32(구암동) | | | | |
| 21 | | 480-27 | 장 | 135 | 53 | 군산시 | | | | | |
| 22 | | 480-28 | 구 | 6 | 6 | 군산시 | | | | | |
| 23 | | 601-22 | 대 | 69 | 24 | 김찬규 | 군산시 구암동 417 | | | | |
| 24 | | 601-23 | 대 | 73 | 73 | 임은미 | 군산시 구암3 1로 30 202동1106호(현대메트로타워2차) | | | | |
| 25 | | 601-24 | 대 | 89 | 89 | 신기우 | 군산시 외산4길 32(구암동) | | | | |
| 26 | | 610 | 도 | 5,883 | 224 | 국 (국토교통부) | | | | | |
| 계 | | 26필지 | | | 11,804 | 1,132 | | | | | |

소로 1-110호선

| 순번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이외의권리자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내용 | |
| 1 | 군산시 구암동 | 486-2 | 답 | 1,422 | 18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 | |
| 2 | | 486-7 | 답 | 992 | 21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 | |
| 3 | | 486-8 | 답 | 1,222 | 2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 | |
| 4 | | 486-12 | 답 | 331 | 10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 | |
| 5 | | 486-13 | 답 | 231 | 7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 | |
| 6 | | 486-14 | 답 | 231 | 7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 | |
| 7 | | 486-15 | 답 | 342 | 9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 | |
| 8 | | 488-2 | 구 | 1,481 | 33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 | |
| 9 | | 488-9 | 도 | 26 | 6 | 국 (국토교통부) | | | | | |
| 10 | | 488-15 | 장 | 143 | 4 | 군산시 | | | | | |
| 11 | | 488-27 | 장 | 397 | 33 | 군산시 | | | | | |
| 12 | | 503-1 | 대 | 119 | 1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 | | |
| 13 | | 610 | 도 | 5,883 | 13 | 국(국토교통부) | | | | | |
| 14 | 경암동 | 486-4 | 도 | 1,666 | 187 | 국(국토교통부) | | | | | |
| 계 | 14필지 | | | 14,486 | 351 | | | | | | |

군산시 고시 제2022 - 17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89)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지곡동 329-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89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28.

군 산 시 장



◆ 사업의 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29-2번지 외 1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 나. 명 칭 : 지곡동 332-1번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중로 2-189호선) 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중로 2-189 : B=16~17.5m, L=147m, A=823m²(폭원확장구간 개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19, 201-2호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디앤아이 대표 정성화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순번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 비고 |
|----|------------|--------|----|-------|---------|-----------|-------------------------------------|----|
| | | | | | | 상명 | 주소 | |
| 1 | 군산시 지곡동 | 329-2 | 전 | 86 | 1 | 군산시 | | |
| 2 | | 484-1 | 도 | 614 | 26 | 국농수산부 | | |
| 3 | 군산시 내운동 | 1495 | 도 | 572 | 161 | 국농수산부 | | |
| 4 | | 191-15 | 전 | 383 | 38 | 군산시 | | |
| 5 | | 산236-4 | 임 | 417 | 45 | 군산시 | | |
| 6 | 군산시 지곡동 | 산104-2 | 도 | 1,020 | 27 | 국(국토교통부) | | |
| 7 | | 산104-3 | 임 | 1,188 | 286 | 군산시 | | |
| 8 | | 329-6 | 전 | 894 | 1 | 군산시 | | |
| 9 | | 329-3 | 전 | 4 | 4 | 군산시 | | |
| 10 | | 329-1 | 전 | 635 | 82 | (주대신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
| 11 | | 329-5 | 전 | 1,099 | 54 | (주대신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
| 12 | | 329-4 | 전 | 28 | 28 | 군산시 | | |
| 13 | | 산104 | 임 | 2,279 | 70 | 국(산림청) | | |
| 계 | 13필지 | | | 9,219 | 823 | | | |

군산시 고시 제2022 - 17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군 산 시 장



- 1. 사 업 명 : 군산 구암동 272-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신한자산신탁(주)
 - 나. 대 표 자 : 배일규
 -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케이티앤지타워 13층
-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5월 19일
-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2년 10월 4일
- 5. 사업내용(변경승인 내용 반영)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272-3 외 23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36,768m²

- 라. 건축면적 : 7,116.2073㎡(건폐율 : 19.35%)
- 마. 연 면 적 : 134,240.3399㎡ (용적율 : 249.14%)
-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 외, 800세대
- 사. 주택공급 계획

| 형별 | 주택구분 | 세대수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비고 |
|-----|------|-----|----------|---------|----------|----|
| 계 | | 800 | | | | |
| 84A | 민영주택 | 341 | 84.8292 | 25.8811 | 110.7103 | |
| 84B | 민영주택 | 134 | 84.7570 | 25.8262 | 110.5832 | |
| 84C | 민영주택 | 186 | 84.9912 | 26.4742 | 111.4654 | |
| 84D | 민영주택 | 133 | 84.9765 | 25.9033 | 110.8798 | |
| 149 | 민영주택 | 2 | 149.5718 | 46.5078 | 196.0796 | |
| 153 | 민영주택 | 1 | 153.5391 | 47.3086 | 200.8477 | |
| 155 | 민영주택 | 3 | 155.9385 | 48.8650 | 204.8035 | |

-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자. 사 업 비 : 311,346,986천원
-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7월 31일

6.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61 | 구암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암동 272-3번지 일원 | 37,624 | 감 7 | 37,617 | 군산시 고시 제2022-78호(2022.0 5.25.)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결정사유 |
|----|--------|---------------|----------------|--------|---|
| 변경 | 61 | 구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암동 272-3번지 일원 | 37,61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대로 | 2 | 4 | 30-33 (15-29) | 보조간선도로 | 7,790 (145) | 경암동 대1-3 | 여방리 10호광장 | 일반도로 | 6호 광장 | 건고228 ('86.5.23) | 인화차로 설치 |
| 기정 | 중로 | 1 | 4 | 20-25.8 (3.3-5.2) | 집산도로 | 745 (122.5) | 구암동 대1-4 | 구암동 대2-4 | 일반도로 | | 건고228 ('86.5.23) | 인화차로 설치 |

()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폭원 확장 및 개설구간임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변경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측량 결과 반영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 위치 | 획지 | |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면적 (㎡) | | |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 | 37,624 | 감 7 | 37,617 | ① | 36,781 | 감 13 | 36,768 | 공동주택용지 |
| | | | | | ② | 566 | 감 1 | 565 | 중로1-4호선(인화차로) |
| | | | | | ③ | 277 | 증 7 | 284 | 대로2-4호선(인화차로) |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 계획내용 |
|----------|----|-------|------|---|
| - | ① |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 폐 율 | | •22% 이하 |
| | | 용 적 률 | | •250% 이하 |
| | | 높 이 | | •29층 이하 |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 변경사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측량 결과 반영
- 기반시설분담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며, 주변지역의 통행여건 개선을 위해 본 지구 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무상귀속

| 시설명 | 사업내용 | 폭원(m) | 연장 (m) | 설치면적(㎡) | |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합 계 | | - | - | 843 | | | |
| 대로2-4 | 원화차로 설치 | 30-33 (구역내 1.5-2.9m) | 145 | 277 | 증 7 | 284 | ()은 폭원확장 |
| 중로1-4 | 원화차로 설치 | 20-25.8 (구역내 3.3-5.2m) | 122.5 | 566 | 감 1 | 565 | ()은 폭원확장 |

- 기타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내용 준수
-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지도 : 실음생략

8.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 - 17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 조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 칭 : (주)은성종합개발

나. 대 표 자 : 유병성

다. 주 소 : 전북 익산시 동서로63길 4, 606호(어양동, 하모니시티)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10월 21일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산137-1번지 외 106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다. 대지면적 : 35,820.0m²

라. 건축면적 : 10,630.9078m²(건폐율 : 29.68%)

마. 연 면 적 : 140,879.5331m² (용적율 : 249.49%)

바. 건축규모 : 지하 4층~지상29층 /아파트 8개동 외, 722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 항별 | 주택구분 | 세대수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비고 |
|-----|------|-----|----------|---------|----------|----|
| 계 | 민영주택 | 722 | | | | |
| 84A | 민영주택 | 160 | 84.6247 | 24.0022 | 108.6269 | |
| 84B | 민영주택 | 106 | 84.6549 | 24.1903 | 108.8452 | |
| 84C | 민영주택 | 106 | 84.3966 | 24.1117 | 108.5083 | |
| 84D | 민영주택 | 85 | 84.8291 | 23.8855 | 108.7146 | |
| 114 | 민영주택 | 261 | 114.3865 | 30.9102 | 145.2967 | |
| 226 | 민영주택 | 4 | 226.6648 | 65.2997 | 291.9645 | |

아.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업비 : 340,214,783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11월 30일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 비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신설 | 69 | 지곡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군산시 지곡동 산37-1번지 일원 | - | 증36,441 | 36,441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결정사유 |
|----|----------|--------------------|--------|--|
| 신설 | 69 | 군산시 지곡동 산37-1번지 일원 | 36,441 | 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공동주택 건설시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위 치 |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기점 | 종점 | | | | |
| 기정 | 중로 | 2 | 16 | 15 | 집산도로 | 948 | 지곡동 대로2-11 | 지곡동 대로2-9 | 일반 도로 | | 군산교210 ('96.6.1) | |
| 변경 | 중로 | 2 | 16 | 15-18 | 집산도로 | 948 (94) | 지곡동 대로2-11 | 지곡동 대로2-9 | 일반 도로 | | 군산교210 ('96.6.1) | 폭원 확장 |
| 기정 | 중로 | 2 | 63 | 15 | 집산도로 | 303 | 소로 1-472 | 지곡동 중로2-16 | 일반 도로 | | 군산교210 ('96.6.1) | |
| 변경 | 중로 | 2 | 63 | 15-18 | 집산도로 | 303 (133) | 소로 1-472 | 지곡동 중로2-16 | 일반 도로 | | 군산교210 ('96.6.1) | 폭원 확장 |

※ ()는 폭원변경부분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
| 중로 2-16 | 중로 2-16 | 일부구간 폭원확장 - L=94m, B=증 3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 |
| 중로 2-63 | 중로 2-63 | 일부구간 폭원확장 - L=133m, B=증 3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 비 고 |
|------|------|--------|------|------------------|--------|------------|
| | | | 획자번호 | 위 치 | 면적(㎡) | |
| | 1BL | 36,441 | 1-① |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 35,820 | 공동주택용지 |
| | | | 1-② | 지곡동 산140-13번지 일원 | 244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 | 1-③ | 지곡동 414-1번지 일원 | 377 | 도시계획시설(도로) |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 - | 1-① | 용 도 | 지정용도: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
| | | 건폐율 | 60% 이하 | 조례 60% 이하 |
| | | 용적률 | 250% 이하 | 조례 250% 이하 |
| | | 높 이 | 29층 이하 | |

4)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구 분 | 계획내용 |
|-----------|--|
|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한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지정된 구간 이외 지역에서는 차량출입 불허 |
| 주변도로 폭원확장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 확폭 - 중로2-16호선 일부구간 확폭개설 : B=증 3m, L=94m - 중로2-63호선 일부구간 확폭개설 : B=증 3m, L=133m |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6.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 - 17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10. 27.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1. 시 행 자 : 군산시청 수산진흥과
- 2.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 3. 공사내용 : 수산물 육성을 위한 자연석시설
- 4. 공사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10-1번지 인근 공유수면
- 5. 공사면적 : 2,000m²
- 6. 공사기간 : 2022. 10. 24. ~ 2022. 10. 31.

군산시 고시 제2022 - 178호

해양관광 SOC사업 시행계획 고시 -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

우리시에서 해양관광 SOC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해양관광 SOC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28.

군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증가하는 해양레저 수요에 부응한 체류형 고부가가치 콘텐츠 도입 필요성 및 고군산군도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통합 관광인프라 조성 여건을 보유하여 광역 단위 서해안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거점 기반 마련
-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해양관광자원 기반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3. 사업의 개요

- 사업예정지 :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65번지 일원(23필지)
- 사업내용 : 해양레저체험시설, 산림휴양체험시설, 기반시설 등 복합단지 조성
- 부지면적 59,674㎡, 건축 2동 * 지구 외 진입도로 4,691㎡
-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3년

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

○ 주요시설

| | |
|----------|---|
| 해양레저체험시설 | 레저레이크(내수면 카누·카약), 오션에비뉴(실내잠수풀, 실내서핑장, 해양테마공간, 인공파도풀), 오션테라스(인피니티풀), 자연형모험놀이터(오션에비뉴부대시설), 모험형 자연체험원(오션테라스부대시설) |
| 산림휴양체험시설 | 숲속가족캠핑장(15동 및 관리동 1동), 숲속쉼터 및 락가든 |
| 기반시설 | 주차장, 내부도로, 녹지 ※ 지구 외 시설 : 진입도로 4,691㎡ |

○ 사업비 : 38,690백만원(국비 19,345 지방비 19,345) * 용지매수비 별도

5. 사업비 조달계획

○ 국비 50%, 지방비 50%(연차별 사업비 투자) * 총사업비 38,690백만원(용지매수비 별도)

6. 사업효과

- 광역 해양레저관광 거점목적지로서 고군산군도 및 새만금 일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관광개발의 선도적 사업으로 해양관광 SOC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지역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지속 유입 도모
- 국내에서 해양레포츠를 즐기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군산·새만금 인근 지역에 트렌드에 맞춘 체험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관광경쟁력 확보, 관광객 유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 일련번호 | 소재지 | | | 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시 | 면 | 리 | | |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1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113 | 전 | 453 | 453 | 군산시 | | | | | |
| 2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114 | 전 | 899 | 899 | 군산시 | | | | | |
| 3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115 | 답 | 707 | 707 | 군산시 | | | | | |
| 4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116 | 전 | 526 | 526 | 군산시 | | | | | |
| 5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117 | 전 | 1,848 | 1,848 | 군산시 | | | | | |
| 6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118 | 답 | 1,491 | 1,491 | 군산시 | | | | | |

| 일련번호 | 소재지 | | | 지번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시 | 면 | 리 | |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7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215-24 | 수 | 11,350 | 11,350 | 군산시 | | | | | |
| 8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215-30 | 잡 | 472 | 472 | 군산시 | | | | | |
| 9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215-31 | 임 | 5,066 | 5,066 | 군산시 | | | | | |
| 10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216-6 | 답 | 360 | 360 | 군산시 | | | | | |
| 11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217-10 | 답 | 1,569 | 1,569 | 군산시 | | | | | |
| 12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222-13 | 구 | 1,425 | 1,425 | 군산시 | | | | | |
| 13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산64 | 임 | 611 | 611 | 채*병 | 군산시 문화로 205 | 주식 회사 전북 은행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 지상권 | |
| 14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산64-9 | 임 | 611 | 611 | 김*주 김*순 | 1. 정읍시 감곡면 2. 정읍시 감곡면 | | | | |
| 15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산65 | 임 | 13,785 | 13,785 | 군산시 | | | | | |
| 16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산66 | 임 | 99 | 99 | 미등기 | | 윤*화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 토지대장 소유자 | |
| 17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산68 | 임 | 992 | 992 | 군산시 | | | | | |
| 18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산69-1 | 임 | 4,483 | 4,483 | 군산시 | | | | | |
| 19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산69-2 | 임 | 393 | 393 | 군산시 | | | | | |
| 20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산71-1 | 임 | 826 | 826 | 군산시 | | | | | |
| 21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산75-1 | 임 | 5,987 | 5,987 | 군산시 | | | | | |
| 22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산77-1 | 임 | 1,457 | 1,457 | 군산시 | | | | | |
| 23 | 군산시 | 옥도면 | 무녀도리 | 산83 | 임 | 4,264 | 4,264 | 이*학 | 김제시 광활면 | | | | |

※ 기타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항만해양과(☎063-454-2813)에서 열람 가능

군산시 고시 제2022-180호

나운동80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군산시 나운동 803-2번지 외3필지 상 「나운동80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 나운동80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나운동 803-2번지 외3필지
- 면 적 : 4,182.10m²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2025. 10. 31. 예정)
-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8. 10. 31. 예정)

*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및 설립인가일

- 명 칭 : 나운동80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454, 3층 5호, 나운동 삼영빌딩.
- 조합설립인가일 : 2022. 10. 31. 끝.

군산시 공고 제2022-213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대로2-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경암동 590-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대로2-4호선)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21.



군 산 시 장

-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경암동 590-7번지 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사업
- 2) 명 칭 : 군산엔마트앞 가감속차로 설치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규 모 : L=126.5m, A=241m² (가감속차로 설치)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236 (공세동)

2) 사업시행자 성명 : 주식회사 군산엔마트 대표 임종빈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위치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이외의권리자 |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내용 | |
| 경암동 | 577-1 | 대 | 3,653 | 47 | 군산시 | 군산시 시청로 17 | | | | |
| 경암동 | 567-1 | 대 | 646 | 21 | 군산시 국(기획재정부) | 군산시 시청로 17 | | | | |
| 경암동 | 583-1 | 대 | 294 | 13 | 군산시 국(기획재정부) | 군산시 시청로 17 | | | | |
| 경암동 | 590-7 | 잡 | 15,308 | 160 | 주식회사 군산엔마트 | 군산시 구암3.1로 111(경암동) | 주식회사우 리은행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 근저당 | |
| | | | | | | | 강겸석 | 군산시 백토로 242, 302동 902호 | 전세권 | |
| 합 계 | 4필지 | | 19,901 | 241 | | | | | | |

군산시 공고 제2022-2196호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공고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들에게 공람합니다.

2022. 10. 27.

군 산 시 장



I.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변경 |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군산시 나운동 588번지 일원 | 35,189 | 감) 40 | 35,149 | |

2. 변경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고시 제2010-170호(2010.7.9)로 지정된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임
- 정비구역 지정시 건축계획안(616세대, 22층, 용적률 215%)으로는 사업성 저하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금회 건축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건축계획안(703세대, 27층, 용적률 250%)을 재수립하였음
- 또한 사업 지연에 따라 정비사업 예정시기가 상당기간 경과함에 따라 사업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3. 주요 변경내용

- 정비구역계 조정 및 면적 변경 : 35,189㎡ → 35,149㎡(감 40㎡)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조서 참조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건폐율 22% → 30%, 용적률 215% → 250%, 높이 22층 → 27층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사업 지연에 따른 시행시기 조정
- 증가 예상 세대수 : 616세대 → 703세대(증 87세대)
- 기타 현행법령에 맞도록 조항 신설 : 조서 참조

II.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경”

|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변경 | 군산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군산시 나운동 588번지 일원 | 35,189 | 감) 40 | 35,149 |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 | | | | |
| 기정 | 중로 | 2 | 6 | 15 | 보조 간선 | 420 | 나운동 중로2-5 | 나운동 중로2-12 | 일반 도로 | 건고525 ('67.7.25) | |
| 변경 | 중로 | 2 | 6 | 15~20.5 | 보조 간선 | 420 | 나운동 중로2-5 | 나운동 중로2-12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60 | 10~12 | 국지 도로 | 396 | 문화동 912-5 중로2-5 | 나운동 529 중로2-12 | 일반 도로 | 건고91 ('68.7.22) | |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 | | | | |
| 변경 | 소로 | 1 | 60 | 10~14 | 국지 도로 | 396 | 문화동 912-5 중로2-5 | 나운동 529 중로2-12 | 일반 도로 | “ | |
| 폐지 | 소로 | 1 | 469 | 10 | 국지 도로 | 93 | 문화동 594-11 중로2-6 | 나운동 592-1 소로3-112 | 일반 도로 | 전북고135 ('78.5.22) | |
| 기정 | 소로 | 2 | 1109 | 8 | 국지 도로 | 57 | 문화동 549-35 소로 1-60 | 나운동 549-7 | 일반 도로 | 전북고71 ('15.4.3) | |
| 변경 | 소로 | 2 | 1109 | 8 | 국지 도로 | 48 | 문화동 549-35 소로 1-60 | 나운동 549-7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112 | 6 | 국지 도로 | 181 | 나운동 568-1 소로1-59 | 나운동 565-1 중로2-6 | 일반 도로 | 전북고136 ('87.10.22) | |
| 변경 | 소로 | 3 | 112 | 6~9 | 국지 도로 | 181 | 나운동 568-1 소로1-59 | 나운동 565-1 중로2-6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119 | 6 | 국지 도로 | 240 | 문화동 536-2 중로1-2 | 문화동 551-6 중로2-6 | 일반 도로 | 전북고135 ('78.5.22) | |
| 변경 | 소로 | 3 | 119 | 6~9 | 국지 도로 | 240 | 문화동 536-2 중로1-2 | 문화동 551-6 중로2-6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4-66 | 4 | 국지 도로 | 237 | 문화동 910-1 중로1-2 | 문화동 915-9 중로2-6 | 일반 도로 | 건고91 ('68.7.22) | |
| 변경 | 소로 | 3 | 4-66 | 4 | 국지 도로 | 237 | 문화동 910-1 중로1-2 | 문화동 915-9 중로2-6 | 일반 도로 | “ | |

나. 도로 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중로2-6 | 중로2-6 | • 일부구간 도로확폭 - B=15m → B=15~20.5m | • 대상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
| 소로1-60 | 소로1-60 | • 일부구간 도로확폭 - B=10~12m → B=10~14m | • 도로 확폭 및 보도 설치 |
| 소로1-469 | - | • 노선폐지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반영 (군산시 고시 제2020-77호(2020. 6.15.)에 따라 폐지됨) |
| 소로2-1109 | 소로2-1109 | • 노선연장 오기정정 및 선형조정 - L=57m → L=48m | • 노선연장 오기정정, 진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선형 조정 |
| 소로3-112 | 소로3-112 | • 일부구간 도로확폭 - B=6m → B=6~9m | • 도로 확폭 및 보도 설치 |
| 소로3-119 | 소로3-119 | • 일부구간 도로확폭 - B=6m → B=6~9m | • 도로 확폭 및 보도 설치 |
| 소로3-4-66 | 소로3-4-66 | • 선형조정 | • 중로2-6호선 접속부 가각 설치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면적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따르도록 함

• 기정

| 시 설 구 분 | 시설의 종류 | 면 적 (㎡) | 비 고 |
|---------|---------------|---------|-----|
| 합 계 | - | 6,114.0 | |
| 근린생활시설 | 상 가 | 720.0 | |
| 관리·복지시설 | 소 계 | 1,940.0 | |
| | 관 리 사 무 소 | 240.0 | |
| | 경 로 당 | 200.0 | |
| | 주 민 공 동 시 설 | 500.0 | 지하 |
| | 보 육 시 설 | 200.0 | |
| | 문 고 | 200.0 | 지하 |
| | 기 계 | - | |
| | 전 기 / 발 전 기 실 | 600.0 | 지하 |
| 주민체육시설 | 소 계 | 3,454.0 | |
| | 주 민 운 동 시 설 | 365.0 | |
| | 중 앙 광 장 | 2,680.0 | |
| | 어 린 이 놀 이 터 | 409.0 | |

• 변경

| 구 분 | 내 용 | | |
|-----|---------|---|-----------|
| | 법 정 | 계 획 (㎡) | |
| 1단지 | 관리사무소 | •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이상 $10 + (\text{세대수} - 50) \times 0.05 = 10 + (446 - 50) \times 0.05 = 29.80\text{㎡}$ | 40㎡ 이상 |
| | 주민공동 시설 |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text{세대수} \times 2.5 = 446 \times 2.5 = 1,115.00\text{㎡}$ | 1,200㎡ 이상 |
| | | 시설의 종류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단지내 설치 |
| 2단지 | 관리사무소 | •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이상 $10 + (\text{세대수} - 50) \times 0.05 = 10 + (257 - 50) \times 0.05 = 20.35\text{㎡}$ | 30㎡ 이상 |
| | 주민공동 시설 |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text{세대수} \times 2.5 = 257 \times 2.5 = 642.50\text{㎡}$ | 700㎡ 이상 |
| | | 시설의 종류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단지내 설치 |

※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면적 및 설치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름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면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비고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주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건축면적 | 6,483.48㎡ | - | - | 삭제 |
| 연 면 적 | 94,376.00㎡ | - | - | 삭제 |
| 건 폐 율 | 22% 이하 | 증) 8% | 30% 이하 | |
| 용 적 률 | 215% 이하 | 증) 35% | 250% 이하 | |
| 규 모 | 지하2층, 지상 22층 이하 | 증) 5층 | 지하3층, 지상 27층 이하 | |
| 최고높이 | 72.0m이하 | 증) 18m | 90.0m이하 |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자연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바이오톱(biotop) 공간확장 |
| 생활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나. 재난방지계획

| 검 토 항 목 | 계 획 내 용 |
|---------|--|
| 수해방지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내 : 단지내 배수관로를 확보 • 사업부지외 : 사업부지 주변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 |
| 소방설비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전은 소방설비에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소방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 • 사업부지로 소방차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단지내 소방차량 동선을 원활하게 계획 |
| 사면안정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흙막이벽을 안전한 구조로 설계 • 운영시 - 일부사면이 발생하나 경사가 완만하여 옹벽공사가 불필요하며 잔디 등 녹색사면을 계획함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조사항목 |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 | |
|---------------|---|-----------------|-----------------|
| 소음 · 진동 |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적용 | | |
| | 구 분 | 주간(07:00~18:00) | 야간(18:00~07:00) |
| | 소음 [dB(A)] | 65 이하 | 50 이하 |
| | 진동 [dB(V)] | 70 이하 | 65 이하 |
| 미세먼지 | •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 |
| 교통안전 | •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충분한 너이로 설치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 | |

8. 세입자 주거대책 : “금회 신설”

- 변경사유 : 현행법령에 맞도록 내용 추가하여 금회 신설
- 재건축정비사업으로서 별도의 세입자 주거대책 수립 대상은 아님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

- 변경사유 : 정비사업 예정시기가 도래하여 금회 변경
- 기정 :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2019년 ~ 2022년
- 변경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 구분 | 아파트 명칭 | 면적 (㎡)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 | | | 비고 |
|----|-------------------|--------|---------------------|-----------|----|----|-----------|----------|----|
| | |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 기정 | 군산 우진· 신남전 아파트 | 35,149 | 군산시 나운동 588번지 일원 | 35 | - | - | 35 | - | |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가. 도로 : “변경”

• 변경사유 : 구역계 조정 및 도로폭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구분 | 위치 | 면적(㎡) | 명칭 | 면적(㎡) | |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도로 | 1-2 | 2,414 | 중로2-6 | 1,712 | 증) 337 | 2,049 | • 도로확폭(B=15→15~20.5m) |
| | | | 소로3-4-66 | - | 증) 9 | 9 | • 가각 설치 |
| | | | 일반도로 | - | 증) 356 | 356 | • 현황도로 확폭 |
| | 1-3 | 134 | 소로3-112 | 350 | 감) 216 | 134 | • 도로확폭 및 보도설치 |
| | 2-2 | 551 | 소로1-60 | - | 증) 158 | 158 | • 도로확폭 및 보도설치 |
| | | | 소로2-1109 | 522 | 감) 129 | 393 | • 도로개설 |
| | 2-3 | 173 | 소로3-119 | - | 증) 173 | 173 | • 도로확폭 및 보도설치 |
| 합 계 | | 3,272 | | 2,584 | 증) 688 | 3,272 | |

나. 상하수도 : “변경없음”

- 상수관로는 중로2-6호선의 기존관로(Ø200)와 연결하여 단지내로 유입되도록 함
- 우수관 및 오수관은 국토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하고, 하수도 배제방식은 자연유하 및 분류식을 원칙으로 설계함
- 오수관은 D=200mm로 설치하도록 하고 우수관은 D=500mm로 설치하여 공급처리에 만전을 기함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특별히 정하지 않음. 다만,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배치계획을 수립함.

1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변경”

• 변경사유 : 사업수지 향상을 위한 건축안 조정사항 반영

가. 증가 예상 세대수

| 구분 | 합계 | 공동주택(전용면적) | | | 단독주택 (상가포함) | 증가 예상세대수 | |
|----|-----|------------|----------------|--------|----------------|-------------|--------|
| | | 60㎡이하 | 60㎡초과 85㎡이하 | 85㎡초과 | | | |
| 현황 | 450 | 270 | 160 | - | 20 | | |
| 계획 | 기정 | 616 | 107 | 476 | 33 | - | 166세대 |
| | 변경 | 증) 87 | 감) 107 | 증) 192 | 증) 2 | - | 증) 120 |
| | 변경후 | 703 | - | 668 | 35 | - | 253세대 |

주) 세대수 및 전용면적은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나. 정비사업 후 평형별 예상세대수

| 정비사업 후 평형별 예상세대수 | | | | | | |
|------------------|-----------|--------|-------|--------|-------|-------|
| 구분 | 계 (세대) | 59㎡ | 74㎡ | 84㎡ | 101㎡ | 114㎡ |
| 기정 | 616 | 107 | 168 | 308 | 33 | - |
| 변경 | 증) 87 | 감) 107 | 감) 87 | 증) 279 | 감) 33 | 증) 35 |
| 변경 후 | 703 | - | 81 | 587 | - | 35 |

주) 세대수 및 전용면적은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는 재건축사업에 의해 완전철거하여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으로 인한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노후화에 의한 재해위험 요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금회 신설”

- 변경사유 : 현행법령에 맞도록 내용 추가하여 금회 신설

| 구분 | 현황세대 | | | 계획세대 | | |
|-----|------|-----|-----|------|--------|--------|
|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소계 | 85㎡ 미만 | 85㎡ 이상 |
| 세대수 | 450 | 186 | 264 | 703 | 668 | 35 |

※ 계획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결정되는 내용을 따름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금회 신설”

● 변경사유 : 현행법령에 맞도록 내용 추가하여 금회 신설

| 구분 | | 계획내용 |
|----------|--------|--|
| 기본방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시 주변 환경요소 및 단지내 영역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정도를 예측하고 범죄가능성을 분석하여 분야별 범죄예방전략 및 대책 마련 |
| 범죄 예방 설계 | 단지내 도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내 동선체계는 가시성 및 영역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설계 |
| | 가로조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시설은 조도,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
| | 공동이용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이용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재시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건축물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사각지대 발생 예방 단지내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 초기에 차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 곳곳에 보안 및 경비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

1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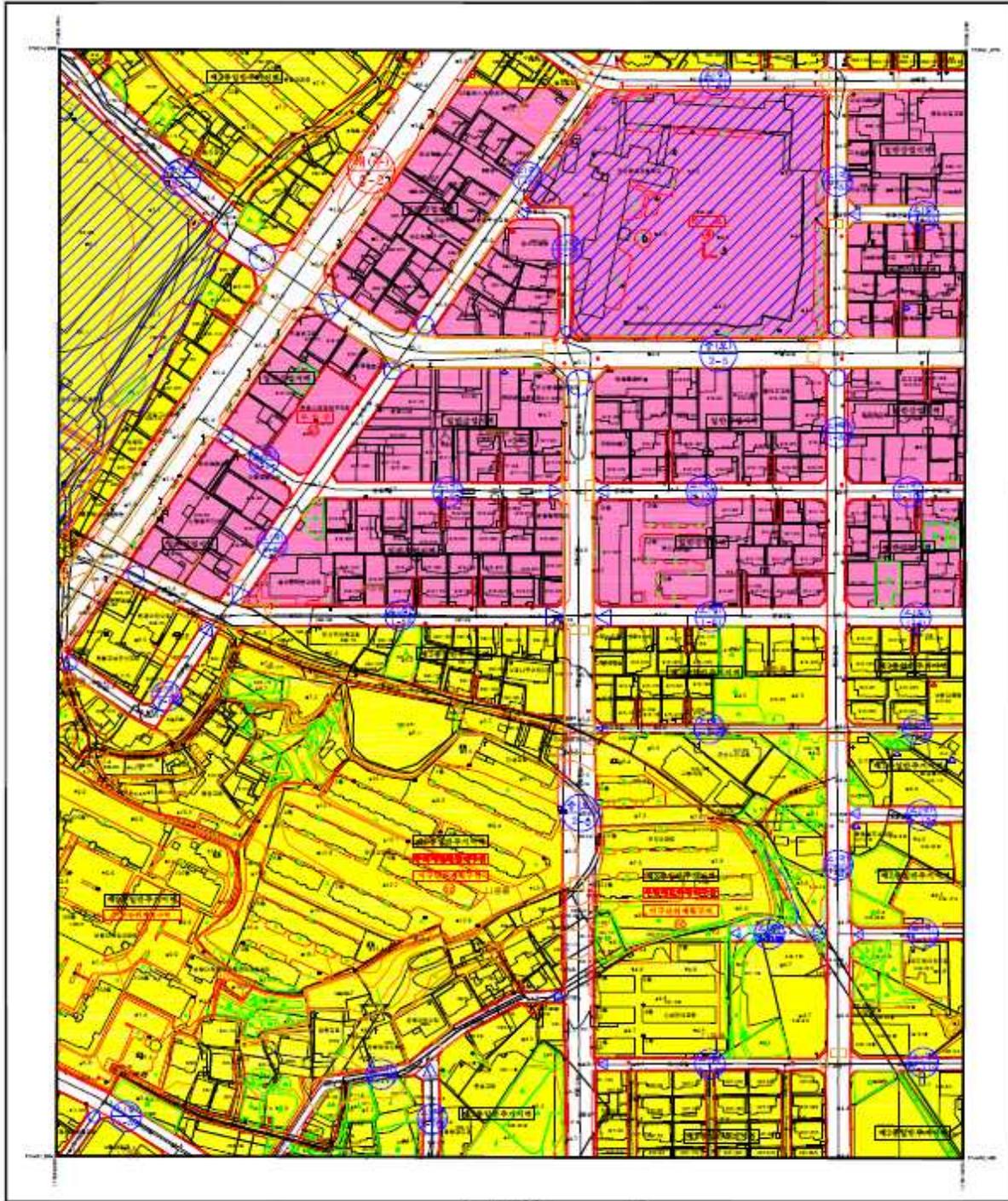
● 변경사유 : 구역계 조정 및 도로폭 변경에 따른 획지 계획 변경

| 가구 번호 | 획 지 | | | | 비 고 |
|-------|-----|-------|--------------------|--------|-----------------------|
| | 구분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
| 1 | 기정 | 1-1 | 군산시 나운동 588대 일원 | 20,375 | 건축용지 |
| | 변경 | 1-1 | 군산시 나운동 588대 일원 | 20,202 | 건축용지 |
| | 기정 | 1-2 | 군산시 나운동 588-3도 일원 | 1,712 | 종로2-6 |
| | 변경 | 1-2 | 군산시 나운동 588-3도 일원 | 2,414 | 종로2-6, 소로3-4-66, 일반도로 |
| | 기정 | 1-3 | 군산시 나운동 593-2대 일원 | 350 | 소로1-422 |
| | 변경 | 1-3 | 군산시 나운동 565-1대 일원 | 134 | 소로3-112 |
| 2 | 기정 | 2-1 | 군산시 나운동 555-7대 일원 | 12,230 | 건축용지 |
| | 변경 | 2-1 | 군산시 나운동 555-7대 일원 | 11,675 | 건축용지 |
| | 기정 | 2-2 | 군산시 문화동 549-24답 일원 | 522 | 소로2-988 |
| | 변경 | 2-2 | 군산시 문화동 549-42답 일원 | 551 | 소로60, 소로2-1109 |
| | 신설 | 2-3 | 군산시 나운동 551-5답 일원 | 173 | 소로3-119 |
| 계 | 기정 | - | - | 35,189 | - |
| | 변경 | - | - | 35,149 | 구역 및 면적 변경(감 40㎡) |

Ⅲ.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1.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변경)



축척 1:1,000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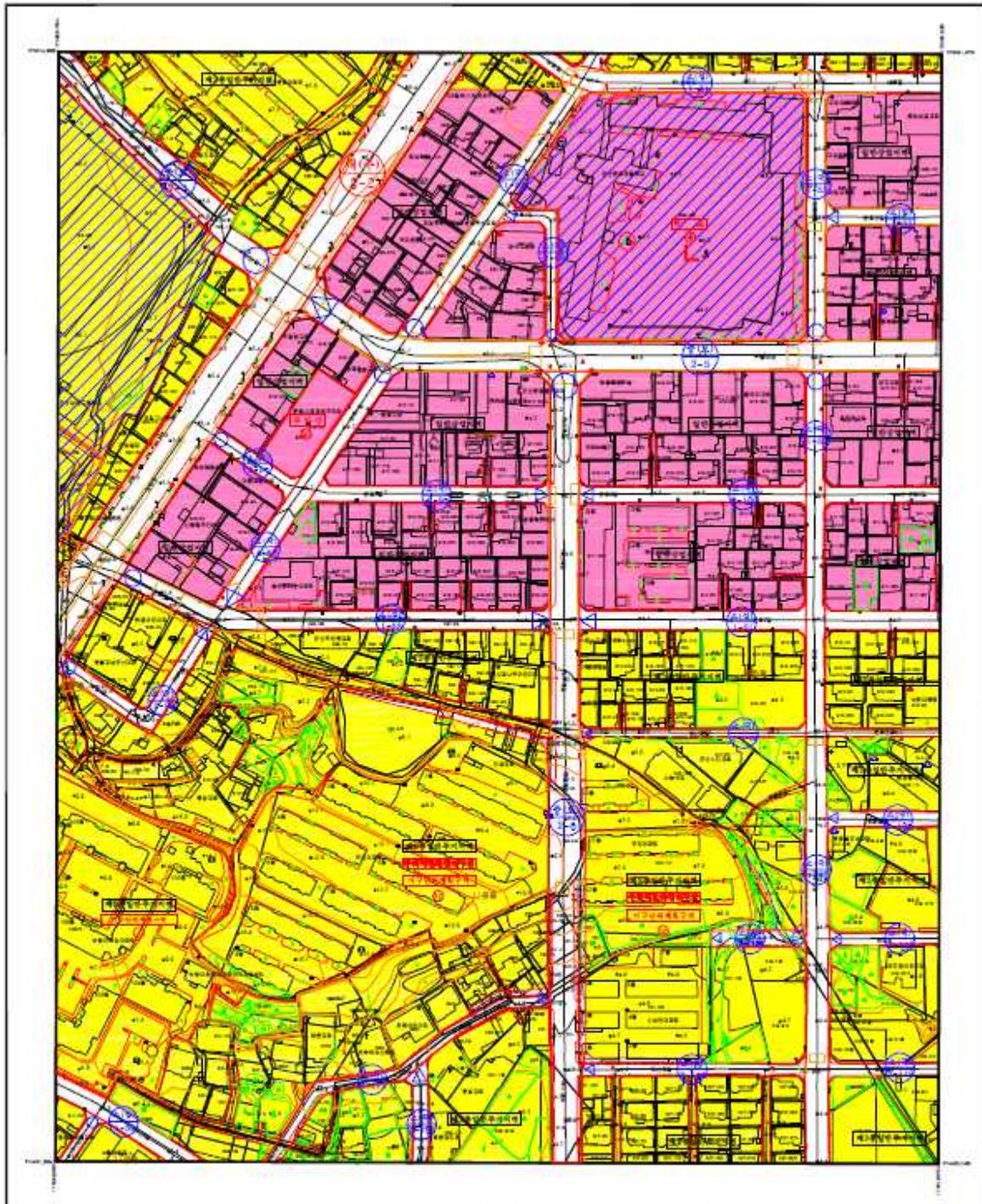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학교
- 일반상업지역

* 단지 분할부분에 한하여 적용

색인도

| | | |
|----|----|----|
| 50 | 41 | 47 |
| 60 | 51 | 57 |
| 70 | 61 | 67 |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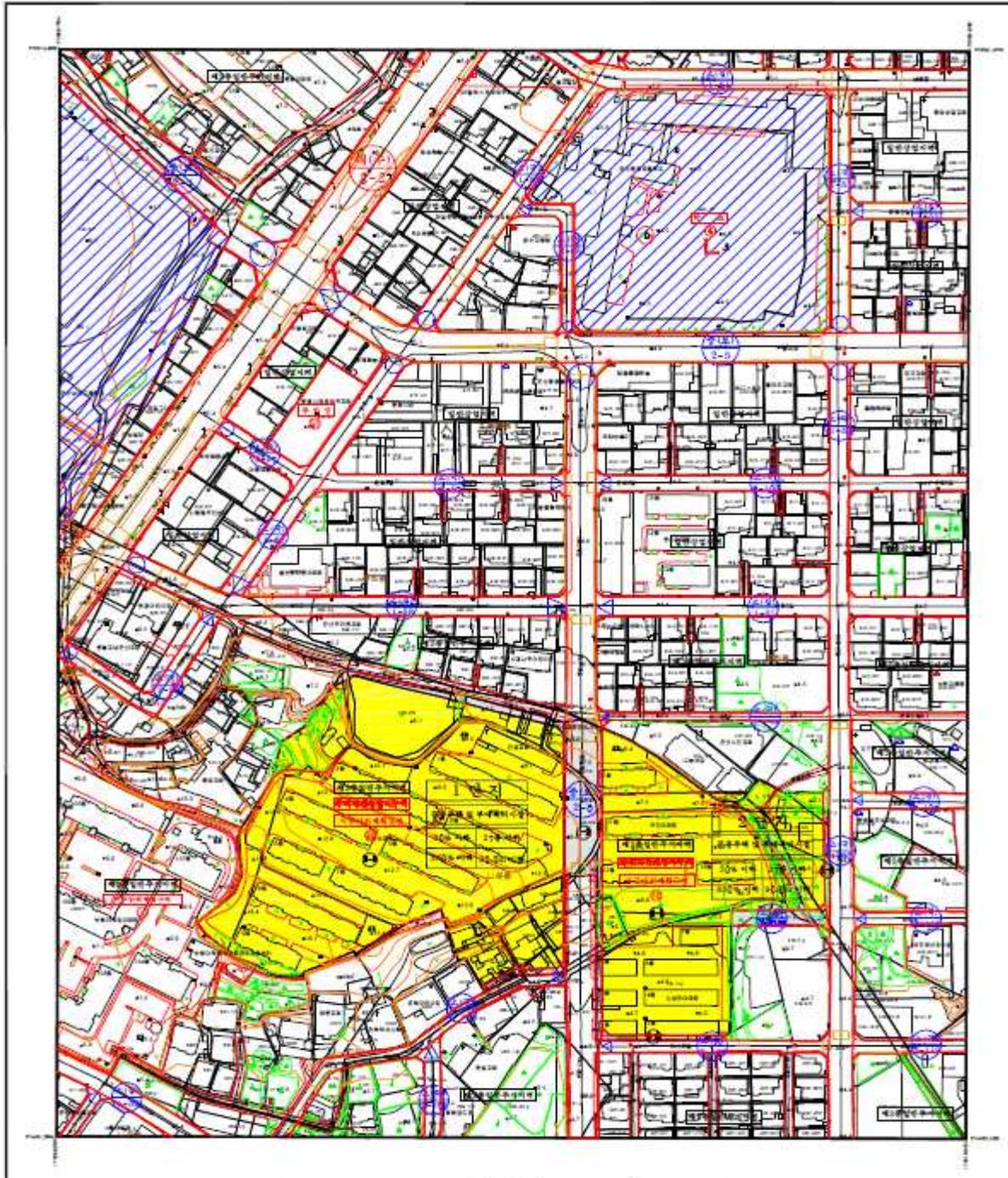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 학교

※ 구역 설정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색인도

| | | |
|----|----|----|
| 50 | 41 | 42 |
| 60 | 51 | 52 |
| 70 | 81 | 82 |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변경)



축척 1:1,000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범례

| | |
|-------------|----------|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주 용 도 |
| 가구 및 획지 경계선 | 건폐율 규 모 |
| 가구 및 획지번호 | 용적률 최고높이 |

색인도

| | | |
|----|----|----|
| | | |
| 50 | 41 | 42 |
| | | |
| 60 | 51 | 52 |
| | | |
| 70 | 61 | 62 |

군산시 공고 제2022-2215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변경공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주민,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8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지정목적 : 드론 관련 허가·승인 조건 등을 유예 또는 간소화하여 드론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함.
- 나. 위 치 : (기존) 제1구역 - 새만금오토캠핑장, 야미도 일대
제2구역 -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관리도 일대
(변경) 제1구역 - 새만금오토캠핑장,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비안도 일대
제2구역 - 선유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일대
- 다. 지정기간 : 2023 ~ 2024년(2년)

2. 열람 및 의견제출

- 가. 기 간 : 2022. 10. 28. ~ 11. 11.
- 나. 열람장소 : 군산시청 산업혁신과(군산시 시청로 17, 6층 산업혁신과)
- 다.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 제출 또는 우편(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기타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산업혁신과(☎063-454-2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군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 1부.
- 2. 군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 의견서 1부. 끝.

붙임1

군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

□ 목 표

- 첨단 ICT 기술 융합으로 도서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체감형 드론 스마트 솔루션 통합 구축 운영
- 스마트드론 국제해양도시(안전, 오염 ESG) 실증 테스트베드 추진
- 드론·UAM 비행회랑 노선구축 및 PAV 공역 조성

□ 위 치 도



| 구 분 | | 사업내용 | 비 고 |
|------|---------------------------------|---|-------------|
| 공 통 | | - 드론비행항로 및 드론배달점 구축 - 드론·해양자율주행로봇 통합 해양안전오염예방시스템 구축 - PAV 공역 조성연계 공간정보기반 구축 | |
| 제1구역 | 새만금오토캠핑장,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비안도 일대 | - VTOL기반 공간정보 UAM 비행회랑 노선 구축 - 해양환경감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관제구역 일부포함 |
| 제2구역 | 선유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일대 | - 갯벌(골) 안전모니터링 통합시스템 구축 - 드론물류배송 실증 및 드론배달점 구축 | 軍 작전구역 일부포함 |

□ 세부사업내용

- (해양 안전 환경 모니터링) way point 활용 좌표 설정 → 환경오염예상지역 VTOL 자율비행 순찰 실증 → 비행항로/운항DB구축 → 관제시스템 송출 및 모니터링
- (해양오염 감시·적발) 주기적으로 해양오염로봇과 드론을 통합 데이터를 획득하여 이전 데이터와 비교한 후 오염빈도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갯벌(골) 안전 구역 모니터링) 드론 갯골DB구축 → QR인식을 통한 출입자 인식 → 금지구역 안내방송을 통한 모바일 등 주의 멘트 발송 → 신속정보전달 (사고발생시 APP/WEB 활용해양조난자 최초 위치 식별 조난자 구조)
- (재난대응 실시간 제공) 해양조난 및 긴급 상황발생시 드론으로 파악된 데이터 및 유관기관 소통채널 마련 시스템을 통해 상황 전파(유관기관 시스템 통합 활용 실증)
- (드론물류배송 및 드론배달점 구축) SW 결합한 다수의 드론을 활용하여 지역 내 섬·격오지 물류배송 실증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긴급재난 상황에 대비 및 이착륙장에 대한 드론배달점 설치 및 DB구축
- (자율비행을 위한 드론 스테이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상지 구역 내 차량형스테이션 구축으로 지속적인 비행 가능한 시스템 구축

붙임2

군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 의견서

| | | | |
|--------|--------------------|-----|--|
| 공고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2-2215호 | | |
| 성명(단체) | | 연락처 | |
| 주소 | | | |
| | | | |

「군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 . .

군 산 시 장 귀하